



급여기준 외 행위·치료재료 정액형 '선별급여' 신설

복지부는 지난 4월 7일,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을 고시, 시행하였다.

이 고시는 선별급여제도 실시를 위한 평가요소 등을 담고 있는데, 이에 따라 건강보험에서 '급여기준 외 선별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을 신설하기 위한 것이다. 즉, 행위나 치료재료에 대하여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다양한 비율 또는 정액으로 정하고, 나머지 금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전까지는 건강보험공단 부담율을 80%로 기본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90% 등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 제도의 신설로 인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일부 행위나 치료재료에 대해) 본인부담율을 이전보다 50%까지 낮추거나 또는 정액으로 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급여평가위원회는 아래의 평가요소에 따라 선별 급여 대상여부 및 본인부담률을 평가한다.

평가 항목	세부 평가요소
임상적 유용성	○ 진료결과의 개선 정도 - 치료효과측면의 개선정도: 진단정확도 증가, 유의미한 생존기간연장, 사망률 감소, 합병증 및 부작용 감소, 재시술률 및 재발률 감소 등
	○ 진료과정상의 개선 정도 - 시술의 용이성, 치료기간 및 시술시간 감소 등 시술자 측면의 개선 여부
	○ 환자측면의 개선 정도 - 통증 및 불편감 감소 등 환자의 편익 및 삶의 질 향상
	○ 보편적 가이드라인 등재 여부 및 권고 수준 - 임상진료지침 개발 전문기구(예: NICE, SIGN 등)의 가이드라인, HTA 결과(예 : 코크란 등), SCI(E) 논문 결과 등 고려
	○ 의료의 질 관리 필요 여부 - 시술위험이 높은 고난도 시술 및 오·남용 가능성 등 고려
비용효과성	○ 개선 효과 대비 추가 소요되는 비용
보험급여에 대한	○ 대상질환의 유병률 또는 (예상)사용빈도 및 대체가능 정도

사회적 요구	○ 취약 계층 이용 여부(소아, 장애인 등 취약계층 또는 희귀질환 등 소수의 환자 집단을 대상)
	○ 질병부담 (환자부담 및 재정부담)
	○ 생존 및 후유 장애 발생과의 직접적 관련 정도
	○ 시급을 다루는 응급 상황과의 관련 정도
	○ 타 질병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선별급여로 결정된 치료재료 또는 행위에 대하여 공단부담금이 비율로 정해지는 경우는 복지부 고시에 본인부담율이 포함되어 고시된다. 즉, '본인부담률'이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80인 경우는 '80', 100분의 50은 '50'으로 표시된다. 공단 부담금이 정액으로 정해지는 경우에는 복지부 고시에 '요양급여비용-공단부담금'(요양급여비용에서 공단부담금을? 제한 금액) 등이 고시되고, 나머지 금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이번 선별급여와 관련한 본인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행위나 치료재료를 대체할 수 있는 비급여 대상에도 '선별급여'가 적용되어 환자들의 선택폭이 넓어지고 비용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사이넥스 서비스

사이넥스 보험부서에서는 보건의료제품의 제조사 및 수입사를 대상으로 치료재료 보험급여 신청, 신의료기술평가 등을 도와 드립니다. 헬스케어 사업에 있어 수익과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치료재료 보험급여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함으로써 수익 창출 전략을 제공해 드립니다. 구체적인 문의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연락처

1. 보험등재관련 문의: 김미영 이사 (kimmy@synex.co.kr), 천새임 차장 (sichun@synex.co.kr)
2. 기타일반문의: 육지희 차장 (jhyook@synex.co.kr)

more about Synex >>



Synex Newsletter는 (주)사이넥스에서 보내드리는 의료기기시장 전문 정보제공서비스입니다. 국내외 전문지와 주요기관이 발행하는 관련 자료들을 매일 검색, 의료기기 사업에 필수적인 정보를 선별하여 알려드립니다.

(135-527)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35 대종빌딩 3층, 10층 / TEL : 02-6202-3300 / FAX : 02-2040-6250
Copyright 2013, Synex Consulting Ltd. All Rights Reserved.